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제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(이하"법"이라 한다)에 의하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3조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상지대학교 안에 둔다.

제 4조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 ① 산학협력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지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처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임대업, 출판업에 관한 업무
7. 학교기업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제 5조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 소속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속기관
2.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

제 2 장　조 직

제 6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 7조(단장 및 부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둔다.(2013. 10. 10 개정)(2014. 01. 28 개정)(2014. 05. 30 개정)

② 단장은 교수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④ 부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2012. 05. 21 개정)(2012. 09. 25 개정)(2013. 10. 10 개정)(2014. 01. 28 개정)(2014. 05. 30 개정)

제 8조(감사)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.(2010. 05. 01 신설)

②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며,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2010. 05. 01 신설)

1.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의 감사
2. 소속 기관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3.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
4.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
5. 연구비에 대한 감사(2012. 09. 25 신설)

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.(2010. 05. 01 신설)

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상지대학교 교수 및 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2010. 05. 01 신설)

제 9조(행정지원조직)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행정지원조직을 둔다. 다만, 행정지원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명시한다.

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제7조에 의거 산학협력단

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조항 변경 2010. 05. 01)(2012. 09. 25 개정)(2015.08.13. 개정)

③ 산학협력단에는 필요한 사무직원등을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무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다.

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 등으로 하여금 교육·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⑥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은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.

제10조1(대외협력위원회) ① 우리대학교 및 산학협력단과 대외기관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한 대학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 기구로서 대외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.(2014. 01. 28 신설)

② 대외협력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단장이 정한다.(2014. 01. 28 신설)

제11조(산학협력위원회) ① 우리대학교와 산업체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타 연구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단안에 산학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단장이 정한다. (개정 2008. 08. 01)

제12조(정책자문위원회) ①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20인 내외로 하며, 필요할 경우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징계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

산학협력단 안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(제정 2008.8.1)

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. (제정 2008.8.1)

③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(제정 2008.8.1)

제3장 재산 및 회계

제14조(재산의 종류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제15조(운영경비)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운영수익
2. 출연금, 기부금, 보조금
3. 사업수익
4. 차입금

제16조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제17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4장 보 칙

제18조(비밀유지의무) 이 정관에서 규정한 조직에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은 업무

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9조(정관의 변경) 총장은 이 정관을 변경 할 수 있다.

제20조(해산) ①산학협력단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②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
③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.

④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21조(공고)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외부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고사항
2. 변경등기 사항 중 산학협력단 명칭 및 사무소재지에 관한 사항
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②공고방법은 신문 및 인터넷 등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되,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③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0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0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1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12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12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14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14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정관은 2015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